

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건의

의안 번호	71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8. 12. .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 원 장

제안이유

- 전국 광역시·도의회 의원배지 모양이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 국회의원 배지와 지방광역의회 의원 배지의 모양과 규격이 비슷하여 혼동을 주고 있어 의원배지 통일안이 필요함.
-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·도의회회장·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의원배지 통일안을 검토한 후 통일안을 확정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도의회의원 배지 모형도 및 규격에 관한 사항중 바탕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(안 별표2)

관련법규

-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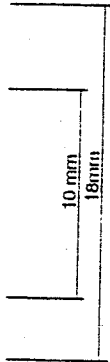
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건

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별표2) 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

모형도



규격

- 무궁화 모형의 직경 : 1.8cm
-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 직경 : 1.0cm
- “의”자의 직경 : 0.8cm
- 바탕색 : 자주색
-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색으로 도금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